

헌재, 낙태죄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

1953년 도입 이후 66년만 “전면금지하는 것은 위헌 임신 초기 낙태 허용을” 내년 말까지 법 고쳐야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 만이다.

헌재는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 한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4(헌법불합치)·3(단순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한으로 법을 개정할 때까지 현행 법이 적용된다.

헌재는 “낙태를 전면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며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아 생명을 보호한다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69차례에 걸쳐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위헌불심판 제정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강석훈 기자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축하 퍼포먼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의 날 '낙태죄는 위헌이다.' 기자회견이 11일 전북지방법원 앞에서 실시된 가운데 위헌이 결정되자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를 비롯한 전북지역 20여개의 단체 관계자들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축하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정부 “낙태죄 헌법불합치 헌재 결정 존중... 후속조치 진행”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하며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준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 부처가 협력해 헌법불합치 결정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법 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의 약물 기타 방법을 활용한 자기낙태를 처벌하고, 형법 제270조 제1항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결정으로, 헌재는 2020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되 그때까지 현행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뉴시스

고창군 “해상경계선 권한쟁의 헌재 판단 존중”

헌재 “곰소만, 고창 주민 터전” 확인

고창군이 헌법재판소의 해상경계선 권한쟁의심판 직후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고창군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가 곰소만 갯벌(제2경송해역) 관련 “갯벌로 분리 돼 있어 ‘등거리 중간선 원칙(지자체에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중간지점을 경계선으로 삼는다는 원칙)’의 예외로 인정된다”는 논지는 지극히 상식적인 타당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헌재는 그간 해상경계 획정에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인정해 왔고, 상대측도 이를 근거로 곰소만 갯벌의 관할권을 주장하며 소송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곰소만의 경우 간조 시 갯벌을 형성해 고창군 육지에만 연결돼 있을 뿐 부안군과는 갯골로

분리돼 고창군 소속 주민들에게 필요 불가결한 생활터전이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의 이용현황과 고창군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확인한 판결이다.

다만, 구시포 앞바다(제1경송해역)의 해상풍력실증단지 관할권과 공해상까지 바닷길이 열렸는지의 여부에 대해선 도면이 제시되지 않아 설부른 판단을 자제했다.

앞서 고창군은 구시포 앞바다와 관련, 국토지리원 해도상의 경계표시는 섬의 관할만을 표시할 뿐 해양경계 획정의 규범적 효력이 없으므로 공유수면 경계가 불문법상 인정되지 않아 ‘섬’이 아닌 ‘육지’ 관할 구역의 등거리중간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헌재가 판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강원 산불 때 대통령 음주설 유포자들 고발 조치할 것”

靑 노영민 비서실장 “허위조작정보에 단호히 대처할” 청와대 내 ‘허위조작정보 대응팀’도 구성 지시

청와대는 최근 강원도 산불 발생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허위 정보 유포자들을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로 본 사안에 대해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실장은 “강원 산불화재 당일 대통령 행적에 대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이와 함께 노 실장은 청와대 내에 ‘허위조작정보 대응팀’을 구성해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9일 이번 투머의 최초 유포자인 ‘진성호 방송’과 ‘신의 한수’ 등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신문의 날 행사에 참석해 언론사 사장들과 술을 마시다 위기관리 센터에 늦게 모습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뉴시스

“임정 수립 4월11일 국경일 지정”

민주당 박광온 의원, 법률안 대표발의

“국군의 날 9월17일 광복군 창설일로 변경”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일과 광복군 창설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이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수립되어 이날 대한민국 국호와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고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공포했다. 이에 현행 헌법 전문에서도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박 의원은 “헌법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의도적이고 소모적인 건국일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956년 제정된 국군의 날은 6·25전쟁 당시 육군이 38선 돌파를



기념하는 의미로 정해진 날”이라며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광복군 창설일을 국군의 날로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국립묘지법도 함께 대표발의 했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인물 가운데 반민족규명법(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나열된 20가지 친일행위를 한 자는 묘지 옆에 친일반민족행위 행적을 담은 조형물을 설치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지난 2005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1005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을 발표했다. 국가보훈처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11명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 기준으로 보면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인사의 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립묘지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와 이를 탄압했던 친일인사의 묘지가 나란히 안장되어 있는 것이다. /뉴시스

“임정 100주년, 한국 민주주의 밑거름”

미 의회, 결의안 발의

미국 의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적시한 한미동맹 결의안이 발의됐다.

10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번 한미동맹 결의안(H.RES.301)은 ‘미국내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결의안’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9일 발의됐다. 결의안에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9년 4월11일 한국의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태동(vibrancy), 성공(success), 번영(prosperity)의 토대가 됐음을 인식한다고 돼 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후 해체와 이전(dissolved and transitioned)을 거쳐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의 첫번째 독립 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졌다고 기술했다. 미 의회에 한미동맹 결의안은 그

동안 많이 제출됐었지만 임시정부 수립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관계는 조선과 미국간 1882년 한미수호통상조약 체결에 따라 외교관계를 수립한 뒤, 1903년 1월 102명의 1세대 한국 이민자들이 미국에 도착한 이래로 200만명의 한국계 미국인이 역동적인 경제 활동과 미국 사회 다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결의안은 평가했다.

또한 한미동맹 관계는 1953년 10월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에 따라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평화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인식하면서, 향후 양국간의 외교·경제·안보의 폭넓은 동맹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하원의원인 민주당 의원 톰 슈우지가 대표 발의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